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부산청 하반기 민원설명회

2018.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순서

1. 수입식품등 수입연황
2. 수입식품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
3. 향후 수입식품법 개정 예정내용
5. 수입관련 주의사항
6. 기타 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수입현황

수입식품등 수입현황

수입 지속 증가

✓ 17년도 수입식품등 수입현황(잠정치)

* 수입건수 : 672,278건

* 수입중량 : 18,294천톤

* 수입금액 : 25,088백만달러

☞ 16년 대비 건수는 7.5%, 중량은 6.0%, 금액은 7.0% 증가

✓ 부산청은 214,670건으로 전국대비 32% 차지

수입식품등 수입연황

▶ 부산청의 최근 10년간 수입처리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03	2006	2013	2018.8
전국	185,299	238,539	494,242	485,517
부산청	90,637	103,130	167,654	150,802
점유율(%)	49	43	34	31

- 부산청은 10년간 전국 대비 20% 수입신고량 감소 추세

▶ 대행업소별 수입신고 현황('18.8.현재)

단위: 건(수)

구분	부산청	서울청	경인청
신고건수	150,802	27,950	297,916
대행업소수	313	201	300
월 신고건/대행업소당	60	17	124

수입식품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

1. 영업자 구분관리 확대

➤ 구분관리 대상

개정 前	수입판매업자
개정 後	모든 영업자로 확대 (수입판매업, 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 영업자 구분관리: 수입식품 검사결과, 위반이력, 국내외 안전정보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관리(일반,우수,특별관리)

2. 동일사 동일식품등 유효기간 추가

➤ 유효기간

개정 前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음
개정 後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에 적용

※ 동일사 동일식품 항목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재료명

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

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및 배합비율

마. (축산물)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그 외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 가공방법, 원재료명

3. 수입통관 단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3.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8 제2호저목·커목 또는 같은 표 제3호나목·라목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수입통관 단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나.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등을 수입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등록 취소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원재료 및 제조일자 (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등록 취소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등록 취소		
4)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17.2.22.)

3. 수입통관 단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등록 취소	
라.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등록 취소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식품등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		
1)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물 등 이물을 혼입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 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하여 수입 신고한 경우로서			
1) 부족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부족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부족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서류 명약화

➤ 면제서류 추가

개정 前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만 인정
개정 後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도 추가 인정

* 단, 예외적으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체 발행증명서에 GMO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도 면제서류로 인정

5.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개정 前	종이 형태 수출위생증명서 인정
개정 後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도 인정

* 미국, 호주, 일본 등 전세계 12개국은 이미 전자검역증 활용

6. 할랄인증서 범위 확대

➤ 할랄인증서 범위 확대

개정 前	축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할랄인증서 요구
개정 後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할랄인증서 제출 불필요

7.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서류 간소화

▶ 용도변경 서류 간소화

개정 前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後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면제

* 면제대상

-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8. 수입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대상 추가

➤ 의무화 대상

개정 前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영업자
개정 後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영업자

* 해당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대상 수입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를 각 지방청에 신청

9. 위에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

➤ 현장검사 대상

개정 前	모든 농임·수산물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
개정 後	부적합이력 등 위해우려 품목으로 현장검사 실시

-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충족하는 농임수산물은 서류검사 실시
다만 수입검사과정에서 부적합이력이나 위해 우려 품목은 현장검사 실시
- * 예시) 토란줄기, 고사리, 마늘, 딸기, 고추 등 부적합 또는 선별 제품은 현장검사

향후 수입식품법 개정 예정내용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점 조정

현행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예정 수입신고 전까지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시기 조정

현행 농림부의 수입가능 결정 이후 수입위생평가 가능

예정 농림부의 수입위험분석 착수와 함께 수입위생평가 실시

➤ 영업자 등록제한 규정 합리화

현행 피성년후견인 또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영업등록 제한

예정 해당 규정 삭제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영업자 보수교육 등 개정사항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규정 부재· 신규 교육 시, 대표자 대신하여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불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신규 교육 시, 대표자 대신하여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가능

➤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소 제재 근거

현행	현지실사 거부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예정	현지실사 거부·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압류제) 도입

- 국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

1. 인체·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등록 농약,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근거 명확화

현행	등록 후 사후 현지실사
----	--------------

예정	등록 전 사전에 현지실사 가능
----	------------------

➤ 수출지원 업무 명확화

현행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서 등 발급
----	-------------------

예정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 지원
----	---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현행	제출 필요한 서류 50종
-----------	---------------

예정	반드시 제출 필요한 서류 22종으로 간소화
-----------	--------------------------------

* 학명, 제조공정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

➤ 조건부 신고수리 제품 관리 강화

현행	보관장소 변경 시 보고의무 등 부재
-----------	---------------------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관장소 변경 시 보고의무· 조건부 신고된 식품의 구분관리 의무· 조건부 수입신고 제외 품목 식약처장 고시
-----------	--

향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구분		적합제품	부적합 제품
공개범위	현행	신설	제품명, 유형, 제조업소 (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부적합내용, 부적합판정일
	예정	제품명, 유형, 제조업소 (수출업소), 신고일, 제조일 (유통기한), 원재료,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추가
공개기한	현행	신설	6개월
	예정	유통기한 종료 시 (유통기한 없는 경우 1년)	변동없음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현행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 필요
----	----------------

예정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도 가능
----	------------------

▶ 보관업자 준수사항 확대

현행	신설
----	----

예정	수입검사 진행중 또는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이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 -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

양후 수입법령 개정 예정내용

▶ 건기식품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 완화

	공통사항	변경내용
현행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배합비율
예정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주원료의 배합비율

* 주원료: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관련 주의사항

수입관련 주의사항

유통기한 표시관련 사항

유통기한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주류 등에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

-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을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수입신고
 - 단 한글표시사항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 가능
 - 수출국 표시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수입·유통·판매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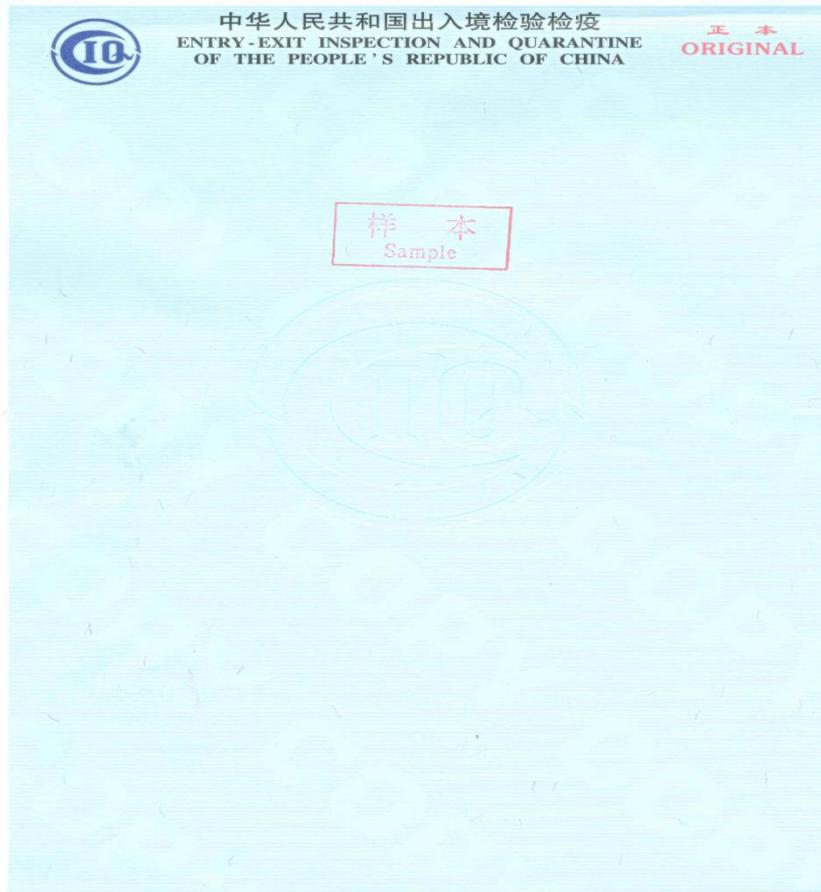
수입관련 주의사항

위조증명서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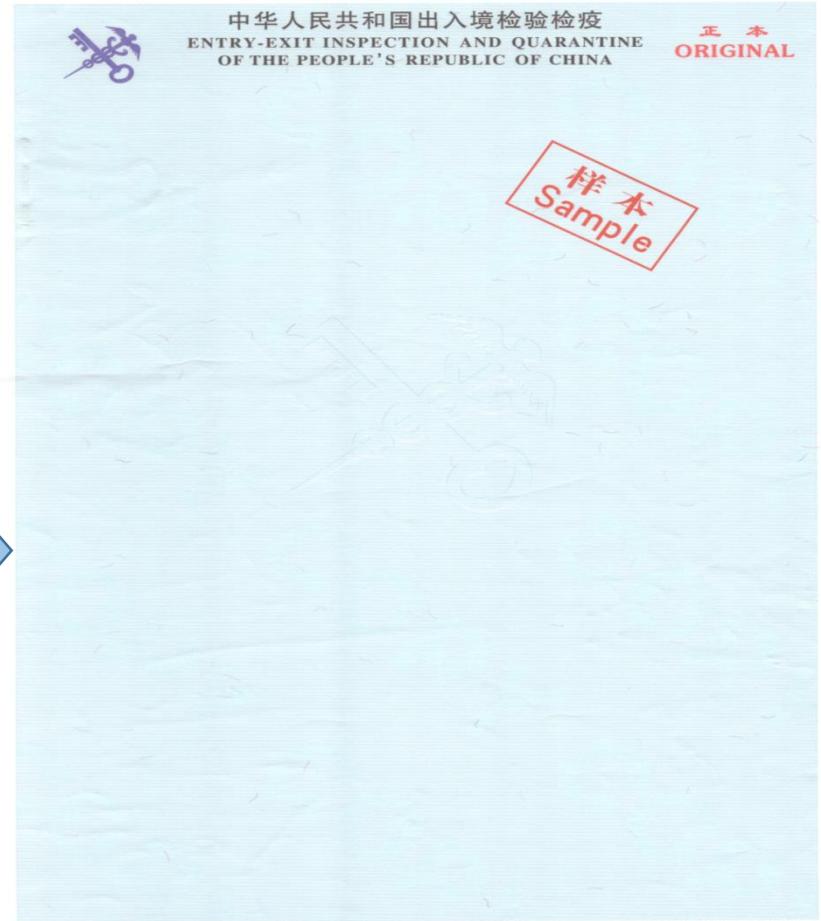
- ▶ 시행일 : 2018.8.21 부터
- ▶ 로고 변경 :  ⇨ 
- ▶ 증명서 중앙 :  엠보싱효과
- ▶ 증명서 좌측 상단 : 녹색 형광
- ▶ 증명서 우측 상단 : 빨간 형광
- ▶ 복사 하면 'COPY' 글자 발현



수입관련 주의사항



변경



< 위조증명서 감별법 >

- 복사했을 때 COPY글자 발현, 복사기로 4배 확대 시 테두리에 영문글자 발현, 자외선 조사 시 형광발현 등

수입관련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 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유전자변형 감자 승인 이후 부터 적용(예정)
승인이전에 유전자관련 내용 표시하면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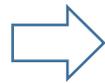
수입관련 주의사항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시 주의사항

- ▶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파파)
매건 사전에 본부의 안전성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신고**해야 함
-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 단,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등의 경우 유전자변형표시 후 수입신고

안전성심사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수입승인

본부 수입식품정책과



수입신고수리

각 지방청

수입관련 주의사항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정지 기간 중 수입식품 반출 등 행위 불가

- ▶ 보관업은 수입식품등을 보관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정지 이전에 반입된 수입식품등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수입식품등을 보관·반입·반출하는 영업행위 불가**

'줄넘기 젤리' 제품명과 놀이방법이 함께 표시된 경우

- ▶ 소비자에게 젤리가 장난감 용도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놀이방법 등의 표시는 부적절함**



수입관련 주의사항

자숙 바지락 또는 홍합 수산물의 유형분류

-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인 경우 : '기타 수산물가공품'
- 구매 후 가열조리 등으로 섭취하는 경우 : '수산물'

→ 제품의 섭취방법 및 용도에 대한 결정은 영업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섭취주의 문구 표시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

예시) 냉동홍합(자숙) 한글표시사항

- "섭취방법: 반드시 가열조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 "수산물"로 분류

수입관련 주의사항

수입수산물 품종코드 변경 예정 알림

- 품종명 : 블루화이팅 → 청대구
- 시행일 : 2019. 1. 1.

수입수산물의 유형분류(수산물가공품) 안내

- 수입수산물(새우 등)에 변색방지용 식품첨가물 용액에 침지한 경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
예시) 새우를 메타중아황산 용액에 침지-세척-냉동한 제품 등

수입관련 주의사항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 수입판매업 및 신고대행업 모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
 - 식용불가 복어를 식용가능 복어의 제품명으로 수입신고
 - 원재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가짜 서명 작성한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 등

부적합 수산물 등 재수입신고 금지

-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국 또는 제3국을 통해 재수입신고 금지
 - 부적합한 수산물(먹장어 등)을 수출국으로 반송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신고
 - 허위서류(위생증)로 부적합된 오징어 등을 위생증명서가 불필요한 제3국으로 반출 후 우리나라에 재수입신고 등

수입관련 주의사항

위장 기만 수입신고로 검사를 기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비정상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또는 비정상제품을 정상제품에 숨겨 수입신고하는 등 관계공무원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비식용 수산물을 식용수산물과 섞어 수입신고하는 사례
 - 수경재배 마늘을 정상마늘에 몰래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선도 등이 불량한 제품에 별도 표식하여 검사관에게 정상제품만 제시하는 경우
 - 수입이 불가능한 수산부산물을 몰래 숨겨오는 행위 등
- ※ 이를 위반할 경우(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공지사항

기타 공지사항

식품관련 표시기준 모음집 자료 활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정책 > 식품안전 정보 > 식품등의 표시
- ②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식품표시정보

수입신고 서류 조회출력 서비스 안내

➤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 가능

※ 정보조회방법 : 식품안전나라 → 온라인민원 → 수입식품등정보공개

기타 공지사항

정밀검사 수수료 신속 납부 협조 요청

- 정밀검사 수수료는 반드시 금액(수수료)이 통보되는 당일 납부 요청
 -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라 정밀검사 의뢰가 지연되면
 - 정밀검사 착수 및 결과통보 지연 초래
- 특히 부산식약청(시험분석센터)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기타 공지사항

각종 '수입식품등 관련 정보' 제공 안내

- 부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든 수입관련 정보 제공
- 검사지시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수신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 (방법) 부산청 수입관리과(051-602-6217)에 정보제공 요청
 - (기타) 경우에 따라 첨부물 수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팩스보다는 이메일로 수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무인 고객소리함' 설치 안내

< 목적 >

수입식품등 검사관련 **민원불만사항, 제보,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피드백하고자 아래와 같이 무인고객소리함을 설치

< 설치장소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16, 효동빌딩(DHL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 공익 신고제도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세상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신고대상)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안전분야 : 부실시공, 불량자재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등
소비자이익분야 :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등), 수사기관, 공사등 공공단체, 국회의원

(포상금)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세상 공익신고

“공익신고” 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모바일 : **부패공익신고 앱**

(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신변 보호) 신변이 불안한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세상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란 무엇인가요?

(부패행위신고)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신고대상 부패행위)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체결·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식자재를 재사용하면서 급식비를 횡령한 사례

(신고대상 불인정)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 행위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세상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 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모바일 : 부패공익신고 앱

(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신변 보호) 신변이 불안한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고맙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